

오산시 자치법규안 예고

「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및 「오산시의회 회의 규칙」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6년 2월 27일

오산시의회의장

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전도현 의원 발의)

1. 제안이유

-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범위에 자동차관련시설을 포함함으로써 지역 내 자동차 관련 기반시설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주민 편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.

2. 주요골자

-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범위에 자동차관련시설 중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, 차고 및 주기장(駐機場)을 추가함(안 별표 15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의견제출

- 제출기일 : 2026년 3월 4일까지
- 제출방법 : 서면, 우편, 오산시의회 홈페이지 등
- 제출서식 :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
(오산시의회 홈페이지>알림마당>입법예고>공지)
- 기재내용 : 주소, 성명, 연락전화번호, 의견
- 제출기관 : 오산시의회(전문위원실)
 - 우편번호 : 447-701
 - 주 소 : 오산시 성호대로 141(오산동, 오산시의회)
 - 전 화 : 031)8036-8031, · 팩 스 : 031)3036-8953
 - 전자메일 : blue6017@korea.kr

오산시 조례 제 호

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5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(제30조제15호 관련)

※ 시행령 및 시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

※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.

1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
2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
3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(단란주점·안마시술소 및 같은 호 너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)
4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및 전시장
5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(농업·임업·축산업·수산업용에 한정한다)
6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·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
7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
8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
9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
10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·식품공장·제1차산업생산품가공공장 및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1의2 제2호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(이하 “첨단업종의 공장”이라 한다)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
 - 가.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
 - 나.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
 - 다. 「물환경보전법」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. 다만,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.

라. 「물환경보전법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
마.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

11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(농업·임업·축산업·수산업용에 한정한다)
12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(위험물제조소, 유독물 보관·저장시설을 제외한다)
13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
14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(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)
15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
16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
17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
18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
19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
20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
21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